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6월 13일

나. 발 의 자 : 박정자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6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등
(안 제6조 ~ 안 제7조)

-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안 제8조 ~ 안 제9조)
-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예산지원(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시설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통학로 개선사업 등의 시행과 이를 위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과 교사, 학부모 등에 의한 통학로에서의 교통지도반 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하여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2,19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감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개선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됨.

참고로 우리구는 현재 1)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어린이교통사고는 80건, 이 중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는 2건 발생함.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 35개소, 어린이집 14개소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박정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일

발의자 : 박정자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등(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 지원(안 제10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5. 31. ~ 6. 7.)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갯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